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3. 10.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3. 10.

제 출 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조문 변경(안 제1조)
- 나. 상위법령에 규정된 불필요한 내용 삭제(안 제2조, 제3조, 제5조)
- 다. 구체적인 허가기준 중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별표)
- 라.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 가.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성별영향 평가
-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3-53호

가) 예고기간: 2023. 1. 11. ~ 2023. 1. 3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6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사업 종류	세부허가기준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	허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자격기준	1. 대표자는 허가 신청 직전 연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일 경우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시설 및 배치기준	1. 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폭 15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다)·라)·마)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적용한다.
액화 석유 가스의 판매 사업 · 충전 사업자 영업소	허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자격기준	1. 대표자는 허가 신청 직전 연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일 경우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배치기준	1. 사업소 부지 내에는 가스사업을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이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시설기준	1. 판매시설의 용기 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 용기보관실 : 38㎡ 이상 - 사 무 실 : 9㎡ 이상 - 주 차 장 : 23㎡ 이상(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소에 적용) 2. 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사업종류	세부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시설 및 배치기준	1. 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폭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다)·라)·마)에서 정한 기준의 2배의 안전거리를 적용한다.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충전사업자영업소	시설기준	1. 판매시설의 용기 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 용기보관실 : 38제곱미터 이상 - 사 무 실 : 9제곱미터 이상 -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다만, 충전사업자 영업소는 제외한다) 2. 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그 한 면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일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조(목적) ----- -----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6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 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5조의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삭 제>

<u>제외한다.</u> <u>1. 시설변경이 없는 사업소 부</u> <u>지의 확대 또는 축소</u> <u>2.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노후화</u> <u>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 교체</u> <u>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u> <u>니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u> <u>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u><삭 제></u>
---	---------------------------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생략함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한 영 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 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 소유 또는 임차계약 등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저장탱크·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로 한정한다. 이하 가)·다) 및 바)에서 같다]·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를 다)부터 마)까지의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와의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다만, 충전설비 중 가스라이터용 충전기는 제2호가 목1)다)의 거리 이상을 유지한다.

나)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저장설비·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流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저장능력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24 m
10톤 초과 20톤 이하	27 m
20톤 초과 30톤 이하	30 m
30톤 초과 40톤 이하	33 m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 m
200톤 초과	39 m

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W = 0.9dV$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W = 0.85dV$

W: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kg)

d: 상용온도에서의 액화석유가스 비중(단위: kg/L)

V: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내용적(단위: L)

2. 동일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가스라이터용 충전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라)에서 같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2) 충전설비 중 충전기는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충전기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을 유지할 것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1)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2)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2.5m 이상을 유지할 것

바) 1999년 4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제7조제1항제5호·제7호 및 제8호(충전기의 수량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만을 말한다)에 따른 변경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가) 및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안전거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1)부터 (3)까지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에 따른 안전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충전시설 변경 전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이 경우 안전성평가의 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신청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2) 안전성평가 결과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 변경·용량 증가 또는 수량 증가로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3)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변경할 것

(4) 저장설비와 충전설비(전용공업지역에 있는 저장설비와 충전설비는 제외한다)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서 정한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저장설비가 지상에 설치된 저장능력 30톤을 초과하는 용기충전시설의 충전설비는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저장능력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17 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 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 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 m
40톤 초과	30 m

사)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로서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시설(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의 2분의 1 이상이 유지되는 시설만을 말한다)은 다음 (1)과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보호시설이 설치되기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다

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가) 안전성평가는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나) 안전성평가 결과 보호시설 설치 후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2)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보완할 것

아)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10) 그 밖의 기준

가)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1)가) 및 아)에 대하여 시·군·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가) 및 아)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